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11004(본소), 2017가합2212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회복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1. A

2. B

3. C

피고(반소원고)D

변론 종결2018. 4. 2.

판결 선고2018. 5.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중 망 E의 예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C에게 480,469,580/3,855,822,38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2. 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874,72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9,592,01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2. 8.부터 2018. 5.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각 13,521,572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3,479,260원 및 그 중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12,397,177원, 원고 C에 대하여는 12,358,380원에 대한 각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A에게 42,310,308원, 원고 B, C에게 각 55,473,6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들에게 2016. 10.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각 893,750원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60,414,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7. 7. 25. 사망한 망 E와 2016. 10. 9. 사망한 망 F의 자녀들로서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E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 E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220동 705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9. 21.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14. 위 각 지분을 H과 I에게 매도하였다.

다. 망 F은 생전인 2011. 4. 5.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6. 10.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 재산	부동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802,810,000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3,012,380원		
소계	3,855,822,380원		
합계	3,909,495,613원		
예금	신한은행 저축예금 J	1,519,618원1) 원고들과 피고 모두 망 F의 사망 당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938,368원에서 망 F의 사망 이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부가가치세 합계 3,418,750원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18. 3. 6.자 준비서면, 원고의 2018. 3. 28.자 준비서면), 위 계좌에 입금된 망 F의 상속재산은 1,519,618원(= 4,938,368원 - 3,418,750원)으로 본다.	
신한은행 저축예금 K	10,618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L	49,142,997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M	3,000,000원		
소계	53,673,233원		
소극재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6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9,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유류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 F의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가 사망할 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망 E 명의의 용인시 아파트를 원고들이 공동상속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원고들과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각 원고들과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 E의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원고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07. 9. 19.경 '원고들은 망 E의 G아파트를 각 1/3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피고는 F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고,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속개시 전 상속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이 있을 경우 위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08.563	2007년	90.931
2015년	106.636	2006년	88.802

2016년	108.563	2007년	90.931
2014년	104.142	2005년	88.926
2013년	103.521	2004년	88.018
2012년	102.645	2003년	85.468
2011년	101.585	2002년	82.661
2010년	100.000	2001년	80.207
2009년	96.935	2000년	77.382
2008년	93.619	1999년	76.550

나) 적극적 상속재산액: 3,909,495,613원

망 F이 사망 당시 보유한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이 3,909,495,61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증여액: 143,636,619원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망 F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로부터 총 213,057,919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원고 B가 망 F 명의의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제15, 20, 28의 각 계좌에서 합계 37,246,564원(= 10,471,889원 + 10,337,792원 + 16,436,883원)을 인출하여 원고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원고 C이 위 목록 순번 제8 내지 10, 12, 13의 각 계좌에서 합계 95,891,582원(= 33,012,587원 + 29,453,709원 + 17,650,139원 + 10,442,285원 + 5,332,862원)을 인출하여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③ 원고 A는 2010. 5.

24. 원고 C으로부터 2010. 4. 30. 망 F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 F으로부터 위 각 금원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F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원고 A에게 지급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망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인출한 금원의 액수와 망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인출 및 입금

시기에도 차이가 있으며, 원고들이 인출 금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위 목록 순번 37의 계좌는 원고 C이 망 F의 예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인출한 금원을 망 F에게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목록 순번 4, 5, 25, 29, 31의 각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합계 79,919,773원(= 170,133원 + 31,607,298원 + 19,268,075원 + 10,911,527원 + 17,962,740원)도 원고들이 망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인출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금원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계좌를 원고들이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금원을 인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망 F으로부터 원고 A는 40,000,000원을, B는 37,246,564원을, 원고 C는 55,891,582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여액을 망 F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환산한 가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43,425,200원, 원고 B 39,801,054원, 원고 C 60,410,365원으로 총 143,636,619원이다.

원고 A	2010. 5. 24.	40,000,000원	108.563/100.000	43,425,200원
원고 B	2010. 11. 24.	10,471,889원	108.563/100.000	11,368,596원
2011. 4. 6.	10,337,792원	108.563/101.585	11,047,907원	
2012. 11. 14.	16,436,883원	108.563/102.645	17,384,551원	
소계	37,246,564원	-	39,801,054원	
원고 C	2010. 4. 30.	40,116,435원2) 원고 C이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제8 내지 10의 각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원고 A에게 지급된 40,000,000원(= 33,012,587원 + 29,453,709원 + 17,650,139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08.563/100.00	43,551,605원
2011. 5. 12.	10,442,285원	108.563/101.585	11,159,578원	
2011. 5. 12.	5,332,862원	108.563/101.585	5,699,182원	
소계	55,891,582원	-	60,410,365원	
합계	143,636,619원			

라) 피고에 대한 증여액: 216,253,801원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것 외에도, 망 F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약 165,000,000원을, 피고의 처 ○ 명의 계좌로 56,783,229원을 지급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약 15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P로부터 망 E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2,9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 모두 피고에 대한 증여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명의 계좌로 증여받은 금원

(가) 피고가 2010. 6.경 원고들로부터 망 F의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제14, 26, 27의 각 계좌를 인계받아 망 F으로부터 총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1. 8. 31. 망 F으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망 F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6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망 F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인계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증여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망 F이 사망한 이후인 2016. 12. 2.경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망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부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부담액까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은 유류분 산정시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처 ○ 명의 계좌로 증여받은 금원

(가) 피고가 2010. 8. 18.경부터 2013. 5. 14.경에 이르기까지 망 F으로부터 피고의 처 ○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6,783,229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을 제24호증의 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 명의의 계좌에서 2011. 9. 29. 망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53,441원을 입금함으로써 아래 표의 순번 1, 2, 3, 7, 8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F으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총 36,486,229원(= 10,600,000원 + 10,000,000원 + 15,886,229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0. 9. 16.	5,000,000원	1	5,000,000원
2	2010. 10. 5.	4,500,000원	1	4,500,000원
3	2011. 3. 31.	6,000,000원	1	6,000,000원
4	2011. 9. 16.	10,600,000원	1	10,600,000원
5	2012. 2. 29.	10,000,000원	1	10,000,000원
6	2013. 5. 14.	15,886,229원	1	15,886,229원
7	2010. 8. 18. ~ 2011. 4. 25.	각 333,000원	9	2,997,000원
8	2010. 8. 18. ~ 2011. 4. 25.	각 200,000원	9	1,800,000원
합계	56,783,229원			

(나) 나아가 피고는 2012. 5. 25. 10,000,000원을, 2016. 7. 15. 5,000,000원을 각 망 F의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 F의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 주체가 피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0. 6.경부터 2016. 10.경에 이르기까지 망 F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총 1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망 F으로부터 2010. 6.경부터 2016. 9.경까지 매달 200만 원씩 총 15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6. 10.경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총 15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0. 6.경부터 망 F이 사망한 2016. 10. 9.경에 이르기까지 망 F과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② 당시 망 F은 치매 증상과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였고 그 비용을 망 F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양보호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망 F을 보살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상생활에 있어 피고와 그 가족들이 망 F을 봉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도 2007. 1.경부터 2010. 6.경까지 망 F과 함께 생활할 당시 매월 200만 원 가량을 망 F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망 F의 생전 자산·수입이나 생활 수준, 피고가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그 금액, 그 무렵 망 F의 건강상태, 피고와 망 F이 함께 생활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망 F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정공동체를 형성·유지하는 동안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상호 동거·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F으로부터 152,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P가 피고의 처 ○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

원고들은 망 E의 채무자였던 P가 2008. 6. 16.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피고의 처 ○ 명의의 계좌로 망 E에 대한 채무의 이자 22,95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망 F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망 E에 대한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피고는 망 F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65,000,000원을, 피고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36,486,229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여액을 망 F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16,253,801원이다.

피고 명의 계좌로 증여받은 금액	2010. 6. 경	80,000,000원	108.563/100.000	86,850,400원
2011. 8. 31.	85,000,000원	108.563/101.585	90,838,755원	
소계	165,000,000원	-	177,689,155원	
피고의 처 O 명의 계좌로 증여받은 금액	2011. 9. 16.	10,600,000원	108.563/101.585	11,328,127원
2012. 2. 29.	10,000,000원	108.563/102.645	10,576,550원	
2013. 5. 14.	15,886,229원	108.563/103.521	16,659,969원	
소계	36,486,229원	-	38,564,646원	
합계	216,253,801원			

마) 상속채무액: 165,000,000원

망 F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액의 합계가 16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4,104,386,033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3,909,495,613원 + 원고들에 대한 증여액 143,636,619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216,253,801원 - 상속채무액 165,000,000원)이 된다.

3)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가) 유류분 비율(B)

○ 원고들 및 피고: 각 1/8(= 법정상속분 1/4 × 1/2)

나) 유류분액(A × B)

○ 원고들 및 피고: 각 513,048,254원(= 4,104,386,033원 × 1/8)

4) 특별수익액(C)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43,425,200원

○ 원고 B: 39,801,054원

○ 원고 C: 60,410,365원

○ 피고: 4,072,076,181원(= 3,855,822,380원 + 216,253,801원)

5) 순상속분액(D)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증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망 F의 적극 재산은 예금채권 합계 53,673,233원뿐이고, 상속채무는 165,000,000원이다. 따라서 위 채권과 채무를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³⁾ 순상속분액은 각 -27,831,691원[=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53,673,233원 - 165,000,000원) × 1/4]이다.

6)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음수로 계산된 경우는 초과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513,048,254원	43,425,200원	-27,831,691원	497,454,745원
원고 B	513,048,254원	39,801,054원	-27,831,691원	501,078,891원
원고 C	513,048,254원	60,410,365원	-27,831,691원	480,469,580원
피고	513,048,254원	4,072,076,181원	-27,831,691원	-3,531,196,236원

7) 소결 피고가 그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특별수익액은 3,531,196,236원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중 위 1/8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⁴⁾.

2)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유류분 부족액 중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은 원물 및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반환할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변론종결시의 시가는 이에 근접한 2017. 12. 5. 당시의 시가인 3,954,921,100원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원고 A	497,454,745원	3,855,822,380원	497,454,745/3,855,822,380	510,239,858원
원고 B	501,078,891원	501,078,891/3,855,822,380	513,957,149원	
원고 C	480,469,580원	480,469,580/3,855,822,380	492,818,157원	

다)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이 중 1/8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97,454,745/3,855,822,380(유류분 부족액/이 사건 부동산 가액, 이하 같다) 지분, 원고 B에게 501,078,891/3,855,822,380 지분, 원고 C에게 480,469,580/3,855,822,38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A, B의 경우 위 각 지분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전등기를 구하는 1/8(= 481,977,798/3,855,822,380) 지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 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80,469,580/3,855,822,38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2. 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산정하면 원고 A 510,239,858원, 원고 B 513,957,149원, 원고 C 492,818,157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494,365,137원(= 3,954,921,100원 × 1/8)이므로,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서 위 1/8 지분의 가액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874,721원(= 510,239,858원 - 494,365,137원), 원고 B에게 19,592,012원(= 513,957,149원 - 494,365,137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원고 C이 이전받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F이 사망한 2016. 10.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7,1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유증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상속개시일인 2016. 10.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각 이 사건 부동산 월 임차료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유류분청구권 행사로 망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증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개시일인 2016. 10. 9.부터 망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증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함을 알면서도 이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6. 10. 9.부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전날인 2017. 2. 6.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2. 7.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및 장래의 사용이익 중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2017. 2.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2.까지 매월 7,1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8.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 같은 금액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8 지분, 원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80,469,580/3,855,822,380$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2017. 2. 7.부터 2018. 5. 10.까지 수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료 중 원고 A, B에게 매월 각 893,750원($= 7,150,000\text{원} \times 1/8$), 원고 C에게 매월 890,953원($= 7,150,000\text{원} \times 480,469,580/3,855,822,380$)이 각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3,521,572원 [$= 893,750\text{원} \times (15\text{개월} + 4\text{일}/31\text{일})$], 원고 C에게 13,479,260원 [$= 890,953\text{원} \times (15\text{개월} + 4\text{일}/31\text{일})$] 및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12,397,177원 [$= 893,750\text{원} \times (13\text{개월} + 27\text{일}/31\text{일})$], 원고 C에 대하여는 12,358,380원 [$= 890,953\text{원} \times (13\text{개월} + 27\text{일}/31\text{일})$]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약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 역시 무효이므로 망 E의 상속재산은 원고들과 피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를 배제한 채 망 E의 상속재산인 G아파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E 명의 예금 284,968,166원을 모두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60,414,013원[= 망 E의 상속재산 총 724,968,166원(= 예금 284,968,166원 + G아파트 매각대금 440,000,000원) × 피고의 법정상속분 1/4 × 원고들의 부담비율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E의 예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재산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망 E의 상속재산인 예금 인출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바(민법 제999조 제2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망 E가 사망한 2007. 7. 25. 당시 원고들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망 E의 예금 284,968,166원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상속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망 E가 사망한 2007. 7. 25.이다.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 중 망 E의 예금에 관한 부분은 상속침해행위가 있는 날인 2007. 7.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9. 18.에 이르러 그 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망 E의 G아파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에 대하여 망 E의
상속재산인 G아파트 중 피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증거,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과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F의 생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망 E의
상속재산인 G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들 명의로 이전하고, 이후 피고도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다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게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던 점, ③ 망 F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약
3,850,000,000원이었으나, 이와 근접한 시기에 G아파트의 가액은 약 44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피고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도 G아파트의 분할협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유증이 각각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⑤ 피고는 망 E의
생전인 2000. 1. 26.경 망 E로부터 서울 성동구 Q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던 반면, 원고들의
경우 망 E의 생전에 망 E로부터 별다른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만 한다면 G아파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게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G아파트에 대한 상속분 상당의 가액반환 주장은 위 협의에 위배되므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중 망 E의 예금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한웅희

판사김수양

별지

1) 원고들과 피고 모두 망 F의 사망 당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938,368원에서 망 F의 사망 이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병원비, 간병비, 부가가치세 합계 3,418,750원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18. 3. 6.자 준비서면, 원고의 2018. 3. 28.자 준비서면), 위 계좌에 입금된 망 F의 상속재산은 1,519,618원(= 4,938,368원 - 3,418,750원)으로 본다.

2) 원고 C이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제8 내지 10의 각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원고 A에게 지급된 40,000,000원(= 33,012,587원 + 29,453,709원 + 17,650,139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3) 원고들과 피고에게 모두 순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인 13,418,308원(= 53,673,233원 × 1/4)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4) ○ 원고 A: 42,310,308원 =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524,288,106원 - 이 사건 부동산의 1/8지분의 감정가액 481,977,798원(= 3,855,822,380 × 1/8)

○ 원고 B, C: 각 55,473,691원 = 원고 B, C의 각 유류분 부족액 537,451,489원 - 이 사건 부동산의 1/8지분의 감정가액 481,977,798원(= 3,855,822,380 × 1/8)

5) ③ = ① / ②

6) ④ = ③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3,954,921,100원